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9
----------	-----

2019년 2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1일, 권수정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2월 25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권수정 의원)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서울시민의 고통 감소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들 보호를 위해 마스크 등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국내·외 영향¹⁾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미세먼지 인체 영향〉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 역 별 : 국외 55% > 서울시 자체 22% > 수도권 12% > 수도권 외 11%
배출원별 : 난방·발전 39% > 교통 37% > 비산먼지 22% > 생물성연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는 실외활동 제한 등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 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최소한의 활동 보장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착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 대기질 상태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비용추계서와 같이 마스크 보급 주체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등 해당 부서에서 기추진²⁾하고 있는 바, 새롭게 추가되는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제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서(교육청 포함)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임.

2) '17년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해 왔으며, '18년도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 보건용 마스크 보급 예산액 20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비용추계서).

또한, 취약계층 중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경우 고용관계의 노동자로서 고용노동부 및 고용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마스크 보급 등 발령단계별 조치 사항은 사업주가 취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³⁾되어 있는 바, 취약계층의 범위를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으로 한정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비용추계서 참조).

- 그리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2019년 2월 15일)이 이미 경과된 바,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4조, 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9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보건용 마스크 지원 대상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12조제2항의 마스크 지원 대상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함.
- 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하 “취약계층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u>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노인 등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제14조제1호의 <u>취약계층</u> 및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권자</u>를 보호하기 위하여 <u>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u></p>